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 일 시 : 2020. 1. 6.(월) 16:00~17:30

☐ 장 소 : 서대문구청 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서대문구 먹거리 정책에 관심 있는 주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 행사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10 (10분)	▶ 인사말씀 및 내빈소개	사회자 (입법지원관)
16:10~16:30 (20분)	▶ 조례안 설명 :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조례안	차승연 구의원
16:30~17:00 (30분)	▶ 토론1. 윤병선 건국대학교(글로벌케어센터) 교수 - 서울시 최초의 자치구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의 기대 효과 ▶ 토론2.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경기제주지사장 - 서대문구 푸드플랜에서 먹거리 기본조례가 갖는 의미	탁현배 서대문공공 급식센터장
17:00~17:30 (30분)	▶ 질의응답 및 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와 주민은 먹거리가 사회, 경제, 건강, 환경, 문화 등 폭넓은 영역에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②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도시계획 등의 정책과 결합된 먹거리정책을 통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③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신선하고 영양이 충분한 먹거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④ 미래의 식량보장을 위해 중소가족농을 배려하는 도농상생의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⑤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며 생태계 보존을 고려하는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구에서 살거나, 배우거나,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먹거리”란 식품 및 농림축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먹거리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먹거리체계”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5.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
6. “도농상생”이란 도시와 농어촌간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축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

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관계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먹거리정책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주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주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주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적, 환경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정책 시행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먹거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이전 기본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등

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 정책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기준설정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이 먹거리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 먹거리보장 기준’ 및 ‘서대문구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먹거리정책 지표 작성 및 각종 통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먹거리정책 지표를 적용하여 구의 먹거리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 실현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주민 먹거리 및 영양소 섭취,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조사
2. 주민 먹거리보장 실태조사
3.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4. 먹거리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사항
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조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먹거리 지원) ① 구청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먹거리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체험 활동, 모니터링,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먹거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중매체, 구청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정책 등 전반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먹거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먹거리위원회

제14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
2.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3. 먹거리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
4. 제23조에 따른 먹거리네트워크와의 상호 협력
5.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관련 협치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6.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시행평가
7.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도시재생추진단장, 주민자치국장, 복지문화국장, 보건소장, 협치조정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먹거리네트워크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내 먹거리 관련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과장을 간사로 하고, 위원회를 담당하는 팀장을 서기로 둘 수 있다.

제1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촉위원 1명이 공동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조사·연구 및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결격사유) ① 위원 중 심의·자문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직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등을 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4장 먹거리네트워크 및 먹거리 민관협치 실무협의회

제23조(먹거리네트워크) ① 먹거리네트워크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관심이 많은 단체 및 주민들로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구와 협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과 주민의 먹거리보장 실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먹거리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먹거리 민관협치 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협치에 기반한 먹거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먹거리 민관협치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협치조정관
2. 위원회 담당팀장 및 주무관
3. 제2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장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이하 “공공급식센터”라 한다)의 장
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

6. 먹거리네트워크에서 추천하는 사람 6명

제25조(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① 실무협의회의 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제24조제2항제6호의 사람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24조제2항제6호의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격월로 개최하되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장은 필요한 경우 먹거리정책 관련 사업을 하는 부서에 대하여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의 담당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5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제26조(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식재료 물류·유통 사업
2. 공공급식 활성화 사업
3.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4. 도농상생 직매장, 가공센터 등 건강 먹거리 공급 확대 사업
5.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교육·홍보·연구·도농교류사업
6.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7. 먹거리 관련 민간 관계자(조직)와의 협치 및 구 먹거리정책 지원 사업
8. 그밖에 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판매시설, 교육시설 및 공공급식센터 등을 통합지원센터 내에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통합지원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 시, 공공급식센터도 함께 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28조(먹거리 주간 운영)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구의 먹거리정책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도농상생 확대 및 인증 농림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서대문구 먹거리 주간”에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과 제2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및 제25조에 따라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그 기능을 공공급식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윤 병 선(건국대 교수)

- 서울시의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함.
- 먹거리 기본 조례는 ‘협치’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조례(안) 제3장 먹거리위원회)
 - 위원수(16조 1항) : 당연직 6명을 제외하면 민간위원수는 14명이내. 보다 다양한 영역의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30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함.
 - 분과위원회의 설치 : 4개 정도의 분과위원회(예: 건강, 보장, 안전, 상생) 설치를 명시하거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
 - 운영위원회의 설치 : 지역의 먹거리관련 현안을 밀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의사결정단위인 운영위원회를 제안함.
 - 정기회의 개최(18조 2항)는 분기별 1회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함
- 먹거리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제24조)과 관련한 조항을 넣는 것보다는 먹거리위원회의 활성화에 방점을 둔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먹거리 민관협치 실무협의회(제25조, 26조)는 먹거리 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제안사항

조항	조례(안)	수정제안
제3조 1항	구에서 살거나, 배우거나, 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	구에 거주하거나, 구에서 활동하는 사람
제3조 3항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
제3조 4항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있는 구조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조리, 소비, 재활용과 폐기 등에 이르는 일련의 총합적, 포괄적 과정과 틀
제10조 1항, 1항 1호	① 다음 각 호의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주민 먹거리 및 영양소 섭취,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조사	①..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항 유지
		① .. 다음 각 호의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항 삭제
제14조	...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1항	지속가능한.... 식재료 물류·유통 사업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제27조 2항	구청장은 판매시설, 교육시설...	유통시설, 가공시설, 교육시설
제27조 3항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2항	단체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단체 또는 사회적경제조직

서대문구 푸드플랜에서 먹거리 기본조례가 갖는 의미

지역농업네트워크 경기강원제주협동조합
길청순 이사장

1. 리뷰 : 서대문구 푸드플랜 주요 내용과 실행과제

1) 비전과 전략 체계

- 공공재, 기본재로서 향유할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권리 보장, 모두를 위한 도시환경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 그에 따른 비전과 전략 제시

[그림] 서대문구 푸드플랜 비전과 전략(안)



2) 우선 추진 과제

- 종합적 접근 시각을 공유하자.
- 탄탄한 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하자. ‘조직화, 정책화, 제도화’라는 세 가지 축에서 거버넌스 기반 강화 제안,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제안
-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자.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권 보장조례 제정, 서대문구 굿푸드 기금 조례 제정 제안

<먹거리위원회 구성(안)>

- * 3개분과, 분과별 소위원회 체계 제안 : 소위원회를 통해 각 단위별 의제발굴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구조
- * 전체 회의 연2회, 기획조정위원회 격월 1회, 분과위원회 월 1회 제안
- * 전체 회의는 타운홀미팅 형태로 추진하고 이 자리에서 분과별 주요 의제 공유 및 의제에 대한 각 단위별 대응방향 논의 및 의견수렴 진행

[그림] 서대문구 먹거리위원회 구성(안)



- 통합적 먹거리정책 시스템을 구축하자. 분산된 먹거리정책을 총괄 조정 및 기획하는 행정단위로서 전담부서 설치,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제안

2. 먹거리 기본조례의 의미

- 거의 10개월의 기간 동안 TFT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왔고 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서대문 먹거리정책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
- 먹거리 기본조례는 그동안 서대문구 안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해 오셨던 다양한 이슈를 제도와 정책적 틀 속에서 풀어내기 위한 일종의 명석이라고 생각하며,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한 존경을 표함.
- 다만, 제3자 입장에서, 또한 푸드플랜 수립에 참여했던 연구자 관점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1) 먹거리위원회 구성 방향

- 당초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방식을 제안했으나 20명 규모의 위원회, 먹거리네트워크, 실무협의체 체계로 반영된 상태임.
- 연구용역 시 소위원회 방식을 제안했던 이유는 구민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먹거리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서대문구 곳곳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함임.
- 조례에 제시된 먹거리네트워크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구성·운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 ‘I CAN DO IT.’은 뭔가 강한 의지를 표현한다는 뉘앙스가 있는 반면, 조례에서 쓰이는 ‘~할 수 있다’는 뭔가 회피적 느낌이 있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실 것임.
- 우리의 정치적 환경을 고려한다면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야 한다’라는 당연규정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행정의 적극적 태도가 필요함.

3) 기타

- 푸드통합지원센터 사무위탁 가능 조직으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정도만 기재해도 될 듯함. 사회적경제조직은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을 포괄하는 개념임.